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7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주영 · 박홍배 · 임호선
이학영 · 정태호 · 박균택
장철민 · 박 정 · 박지혜
서영교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

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22조제5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을 “제2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제3항제3호 ----- ----- -----.
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u>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u> <u>람</u> <u>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u> <u>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u> <u>람</u> <u>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u> <u>높고물관리 분야에 학식</u> <u>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④・⑤ (생략)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5. <u>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u> 6. ~ 9. (생략)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u>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u>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7조제3항에 따른</u>----- ----- ----- 6. ~ 9. (현행과 같음) 제21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3항제3호</u>----- ----- -----
--	--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

-----.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부한 사람</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